

의안번호	제 119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관리가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헌경 의원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1월 11일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헌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1월 11일
 발 의 자 : 임헌경
 권기수, 김동환 이광진
 이수완 김재중, 임 현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명기된 조항을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)
- 나.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
"균형건설국장"을 "재난업무 담당국장"으로, "재난업무 담당"을 "재난
업무 담당사무관"으로 변경
(안 제7조제1항, 제8조 3항 및 6항)
- 다.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
~의 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라, ~내지 ⇒ ~부터, 가진 자 ⇒ 갖춘 사람
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붙임
- 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6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- 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
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5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관리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8조제2항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도지 사는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 행령」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재난업무 담당국장
2. 기금출납원 : 재난업무 담당사무관

제8조제3항 중 “건설방재국장” 을 “재난업무 담당국장” 으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”를 “재난관리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” 으로, 같은 조 제6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재난업무 담당” 을 “재난업무 담당사무관” 으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. 기금의 운용수입 3. 기타 잡수입 등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(이하 “장기예치기금액”이라 한다)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·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(이하 “당해년도 사용기금액”이라 한다)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장기예치기금액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5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」 제 75조제 3항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제3조(기금의 관리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 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 이라 한다)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 20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
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</p> <p>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</p> <p>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%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)</p> <p>① 도지사는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</p> <p>② 법 제 40조부터 법 제 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%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재난업무 담당</p> <p>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재난업무 담당국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재난업무 담당사무관</p> <p>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건설방재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, 사회 복지, 민방위,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재난관리</u>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<u>재난업무 담당</u>이 된다.</p> <p>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p> <p>① 도지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<u>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기금의 조성계획</u> 2. <u>기금의 사용계획</u> 3. <u>기금의 운용방법</u> 4. <u>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<u>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재난업무 담당국장</u>이 된다.</p> <p>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, 사회 복지, 민방위,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<u>재난관리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</u>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<u>재난업무 담당사무관</u>이 된다.</p> <p><삭 제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]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가 필요한 사업
2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
3.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사업
4.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5.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, 침수흔적도 작성·보존 등의 사업
6.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
7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8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9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·정비·보강 등의 사업

10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

-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12.7]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6조(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)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6조(결산보고서의 작성)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수입

- 가. 수입계획액
- 나. 징수결정액
- 다. 수납액
- 라. 불납결손액
- 마. 미수납액

2. 지출

- 가. 지출계획액
- 나. 전년도 이월액
- 다. 지출계획현액
- 라. 지출액
- 마. 다음 연도 이월액
- 바. 불용액

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